

의안번호	2212284
의 퇴 인	윤영석 의원
회 답 일	2025. 10. 2.
추계번호	25A4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수도권 밖 공제금액 상향조정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1,366억 원, 2030년 1조 79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 7,080억 원(연평균 1조 6,7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상시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3년간 적용되므로, 2027~2030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 추계시 사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감면실적은 다년간 공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실적을 제외하고 추정함에 따라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0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등 (안 제29조의8 제1항)	11,366	22,766	22,158	10,790	67,080	16,77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9조의8 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7.12.31. ○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공제금액 상향조정 (단위 : 만 원) <table><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중소기업</th><th colspan="2" rowspan="2">중견기업</th><th rowspan="2">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청년</td><td>1,450</td><td>1,550</td><td colspan="2">800</td><td>400</td></tr><tr><td>그 외</td><td>850</td><td>950</td><td colspan="2">450</td><td>0</td></tr></table> ↓ <table><tr><th rowspan="2">(개정안)</th><th colspan="2">중소기업</th><th colspan="2">중견기업</th><th rowspan="2">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청년</td><td>1,450</td><td>1,700</td><td>800</td><td>1,000</td><td>400</td></tr><tr><td>그 외</td><td>850</td><td>1,200</td><td>450</td><td>600</td><td>0</td></tr></table>	(현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1,450	1,550	800		400	그 외	850	950	450		0	(개정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1,450	1,700	800	1,000	400	그 외	850	1,200	450	600	0	
(현행)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1,450	1,550	800		400																																								
그 외	850	950	450		0																																								
(개정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1,450	1,700	800	1,000	400																																								
그 외	850	1,200	450	600	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
 - 2026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
- 상시근로자는 2023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의 기업규모·지역·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과세자료 및 「사업체패널조사」 등의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
 - 동 제도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중대 세액공제’) 등 5개의 개별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통합
 -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중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400~1,55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1인당 공제액은 기업규모별·지역별·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 2024.12.31. 고용중대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신청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기업규모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2020~2024년 신고연도 기준 기업규모별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구분

- 다만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공제액 비중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21~202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평균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공제액의 수도권 비중('21~'23년 평균): 중소기업 68.9%, 중견 및 대기업 70.75%
- 근로자 유형별 공제액 비중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 (2021년 기준)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사업체패널조사」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일반법인 59.9%
- 향후 신규 발생하는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감을 전망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

3.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5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하여 운용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합
 - 기본공제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포함

[표 2]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舊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
(단위: 만 원)

			舊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 소 기 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1,000	1,100	1,100	1,100	1,100	1,450	1,450
		수도권 밖	1,100	1,200	1,200	1,200	1,300	1,550	1,550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700	700	700	700	700	850	850
		수도권 밖	770	770	770	770	770	950	950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舊 고용증대세제					통합고용세액공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견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700	800	800	800	800	800	800
		수도권 밖	-	-	-	900	900	-	-
	일반 근로자	수도권 내	450	450	450	450	450	450	450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2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300	400	400	400	400	400	400
		수도권 밖	-	-	-	500	500	-	-
	일반 상시근로자	수도권 내	-	-	-	-	-	-	-
		수도권 밖	-	-	-	-	-	-	-
	공제기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주: 1)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청년(19~34세, '22년은 19~29세), 고령(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22년 미포함) 상시근로자 등이 포함

- (공제액 실적)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신고기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추세였으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으로 감소
- 2023~20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표 3]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액: 2020~2024년

(단위: 억 원)

		舊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¹⁾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소득세		4,283	6,336	8,898	11,191	9,559	4,720
법인세	중소기업	6,212	9,002	11,950	14,027	11,039	4,649
	중견기업	1,300	1,491	2,061	2,396	1,659	542
	대기업	1,017	1,131	1,257	1,725	846	600
	소계	8,529	11,624	15,268	18,148	13,544	5,791
합계		12,812	17,960	24,166	29,339	23,102	10,511

주: 1)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자료: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2024년 신고기준 세액공제액을 수도권과 지방, 청년 등 근로자 유형별로 구분한 후, 향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를 추계

- 2023.1.1. 시행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신고분부터 집계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공제실적을 발생연도별로 구분하여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으로 가정
 - 가령 2026년 공제실적의 경우, 2024년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공제액과 2025년에 신고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 2026년에 신규 발생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제액이 모두 포함
- 2024.12.31.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이 종료함에 따라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신청액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실적은 2023년 2조 9,339억 원 발생하였으나 2024년 2조 3,102억 원으로 감소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감면액이 훨씬 크므로 2024년 과세연도부터 신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액이 없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
 - 다년간 공제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의 특성상 향후에도 감면실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추계함

[표 4]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세수효과 발생연도

(단위: 억 원)

		2024	2025	2026	2027	2028
'24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₄	A ₂₄	A ₂₄		
	대기업	B ₂₄	B ₂₄			
'25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₅	A ₂₅	A ₂₅	
	대기업		B ₂₅	B ₂₅		
'26년 신고된 신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A ₂₆	A ₂₆	A ₂₆
	대기업			B ₂₆	B ₂₆	
합계		A ₂₄ +B ₂₄	A ₂₄ +B ₂₄ + A ₂₅ +B ₂₅	A ₂₄ +A ₂₅ +B ₂₆ + A ₂₆ +B ₂₆	A ₂₅ +A ₂₆ +B ₂₆	A ₂₆

주: 1) 2024년 신고된 신규 공제는 2023년 과세연도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액
 2) A는 중소기업, B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이며, 아래첨자는 최초 공제가 발생한 신고연도를 의미

- 향후 신규 공제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며, 발생한 신규 공제액 추정치가 신고연도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세수효과 추계
 - 신고연도를 기준 신규 공제대상으로 포함된 기업의 공제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3년까지, 대기업은 2년까지 다년간 공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총 1조 511억 원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상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액은 법인세 5,791억 원, 소득세 4,720억 원으로 총 1조 511억 원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법인세 공제액 자료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유형별 구분되지 않으며, 지역별 구분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구분되지 않음
 -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연도 기준 소득세 공제액 자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근로자 유형별 구분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
 - 지역별 구분은 2021~2023년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공제액의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연평균 비중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수도권 비중('21~'23년 평균, %): 중소기업 68.9 중견 및 대기업 70.7
 - 근로자 유형별 구분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9차년도(2021년 기준)에서 산출한 전년대비 고용증대 기업의 일반 상시근로자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
 - *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52.8, 중견기업 59.9, 대기업 100.0¹⁾

1) 대기업의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미적용

[표 5]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액

(단위: 억 원, %)

'24년 통합고용세액 공제액 등(A)			지역별(B)	근로자 유형별		'24년 공제액 안분 (D=A×B×C)
				구분	비중(C)	
법인세	중소기업	4,649.0	수도권	청년 등	52.8	1,554.5
				일반	47.2	1,388.5
			비수도권	청년 등	52.8	901.1
				일반	47.2	804.9
	중견기업	541.9	수도권	청년 등	59.9	229.8
				일반	40.1	153.6
			비수도권	청년 등	59.9	95.0
				일반	40.1	63.5
	대기업	600.0	수도권	청년 등	100	424.5
			비수도권	청년 등	100	175.5
	소계	5,790.9	5,790.9			
소득세	중소기업	4,720.3	수도권	청년 등	52.8	1,399.7
				일반	47.2	1,250.3
			비수도권	청년 등	52.8	1,093.5
				일반	47.2	976.8
	소계	4,720.3	4,720.3			
합계		10,511.2	10,511.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향후 신규 공제액 추정) 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2025.3.31)를 반영하면, 향후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년 1조 1,366억 원에서 2028년 1조 1,4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개정안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은 사업연도 기준 2026~2027년까지 적용되므로, 신규 공제액은 신고연도 기준 2027~2028년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 2026~2027년간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2025.3.31.)은 0.3~0.4% 수준으로, 귀속연도 기준으로 공제액은 취업자 수 증가율과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가정

[표 6] 신고연도 기준 신규 공제액 추정치: 2027~2028년

(단위: 억 원, %)

		2027	2028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0.4	0.3
소득세		5,150	5,166
법인세	중소기업	5,013	5,028
	중견기업	595	596
	대기업	608	610
	소계	6,216	6,234
합계		11,366	11,400

□ (연도별 세수효과 배분) 신규 공제액을 기업규모별 다년간 공제혜택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세수효과를 배분하면 2027년 1조 1,366억 원, 2030년 1조 790억 원 등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대기업의 경우 2년간 공제가 적용됨을 감안하여 신고연도 기준으로 연도별 세수효과를 추계
 - 개인사업자의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의 공제액에 포함

[표 7] 신고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 2027~2030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2027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758	10,758	10,758	
	대기업	608	608		
	소계	11,366	11,366	10,758	
2028년 신규 공제	중소·중견기업		10,790	10,790	10,790
	대기업		610	610	
	소계		11,400	11,400	10,790
합계		11,366	22,766	22,158	10,790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조 1,366억 원, 2030년 1조 790억 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 7,080억 원(연평균 1조 6,77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상시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3년간 적용되므로, 2027~2030년까지 세수효과 발생
 - － 추계시 사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감면실적은 다년간 공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실적을 제외하고 추정함에 따라 과소추계될 가능성이 있음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소득세 및 법인세, 2027~2030년

(단위: 억 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등 (안 제29조의8 제1항)	11,366	22,766	22,158	10,790	67,080	16,77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